

2026년도 LMO 안전관리 현황조사 문항 작성 매뉴얼 (대학)

2026.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National Research Safety Headquarters

Contents

- I** 기관 현황조사 문항 작성 매뉴얼 4
- II** 시설 현황조사 문항 작성 매뉴얼 31
- 참고** 현황조사 관련 주요 FAQ 34

LMO 안전관리 현황조사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LMO) 취급 기관·시설의 연구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현황조사(이하 LMO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36조 보고 및 검사)

LMO 현황조사는 2019년부터 전수조사로 실시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과기정통부에 신고된 1,168기관 6,744시설이 LMO 현황조사 및 후속조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올해에도 LMO 현황조사 대상 **1,189기관 6,939시설**의 연구자 및 관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및 LMO 안전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험·연구용 LMO 안전확보와 연구진흥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귀 기관의 응답 내용은 조사·통계처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미응답 또는 불성실 응답 기관·시설은 후속조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는 "LMO 점검시스템(www.lmosafety.or.kr/fis)"을 통한 온라인 조사입니다.

※ 설문 작성 시 공문 또는 이메일 별첨자료(①LMO 점검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②LMO 현황조사 문항 작성 매뉴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황조사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MO 현황조사 임시 콜센터 : 02-3415-5144

✉ LMO 정보시스템 또는 LMO 점검시스템 내 Q&A

☎ LMO 교육팀 : 043-240-6474

✉ kyongj903@kribb.re.kr



기관 현황조사 문항 작성 매뉴얼

1. 기관 기본 현황 (기관 기본 정보)

<문항>

1-1. 귀 기관의 정보를 작성해 주십시오.

기관명	자동입력	전화번호	자동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입력	대표자 성명	자동입력
사업장 주소	자동입력		

1-1-1. 유형상세1

①국립 ②공립 ③시립 ④사립

1-1-2. 유형상세2

①4년제 일반대학교 ②2-3년제 전문대학 ③대학교 산학협력단
 ④과학기술특성화대학교(KAIST, GIST 등) ⑤대학원대학 ⑥단과대학 ⑦기타()

1-1-3. 유형상세3

①본교 ②분교(캠퍼스)

<작성 가이드>

◆ 작성기준 : **작성일**

□ 1-1. 기관정보 작성

- 기관구분 기준 : 신고된 LMO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위치, 장소 기준 아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기관구분 예시】

★ 상황 : ABC대학교는 서울본교, 서울본교산학협력단, 부산분교(캠퍼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가 모두 다름. 신고된 LMO 연구시설은 서울, 부산 각각 위치하고 있고 LMO 안전관리는 서울본교에서 통합관리 하고 있음

- (기관구분1) LMO 연구시설이 소재지별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된 경우
 - ABC대학교(서울)로 신고된 LMO 연구시설과, ABC대학교(부산)으로 신고된 LMO 연구시설은 각각 다른 기관의 시설로 분류됨
 - 따라서 서울본교, 부산분교는 각각 별도로 기관현황을 작성해야 함
 - 만약 서울본교의 연구시설 중 일부가 산학협력단 기관명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산학협력단 역시 다른 기관으로 분류되며 별도의 기관현황을 작성해야 함
- (기관구분2) LMO 연구시설이 모두 서울본교로 신고된 경우
 - 연구시설이 부산분교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신고 기관이 서울본교인 경우, 서울본교만 조사대상임
 - 서울본교에서는 부산분교 현황까지 모두 파악하여 기관현황을 작성해야 함

- 1-1-1 ~ 1-1-3. 유형상세 : 기관별 자체 판단하여 입력

I. 기관 기본 현황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문항>

1-2. 귀 기관의 2025년 LMO 연구시설 사용자(연구활동종사자) 수를 등급별로 작성해 주십시오.
(본 문항은 연구시설 현황조사 입력값과 연동됩니다) (단위 : 명)

구분	연구시설 사용자 수		합계	
	1등급 연구시설	2등급 연구시설		
대학	설치·운영책임자	연동	연동	자동입력
	교수, 연구교수 (설치·운영책임자 미포함)	연동	연동	자동입력
	연구원(postdoc 포함)	연동	연동	자동입력
	대학원생(석·박사)	연동	연동	자동입력
	실습 조교	연동	연동	자동입력
	학사 과정	연동	연동	자동입력
	기타	연동	연동	자동입력
계	자동입력	자동입력	자동입력	

<작성 가이드>

◆ 작성기준 : 2025년 12월

【단어 뜻 설명】

- 연구시설 사용자 : 신고된 LMO 연구시설을 이용하는 자(연구활동종사자 보다 넓은 의미)
- 학사 과정 : LMO 연구시설에서 실험·실습 강의를 받는 학부생 및 상주학생 모두 포함

□ 1-2. 연구시설 사용자 작성

- '연구시설 현황조사 데이터 불러오기' 버튼 클릭 시 기관 내 연구시설 현황조사(2025년)의 종사자 입력값이 취합되어 연동
※ 불러온 데이터는 직접 수정 가능하므로 중복값 등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제출
- '대학', '병원'의 연구시설 사용자 수가 중복되는 경우 종사자의 소속기관을 기준으로 입력
- 일부 연구자가 여러 개의 연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소속 연구시설을 기준으로 입력
※ (예시) A 연구시설에 상주하는 연구자가 공용기기실 B, 사육실 C를 이용하는 경우 A 연구시설에만 수치 포함

Ⅱ. 생물안전관리 인력(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문항>

2-1. 귀 기관에서는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 하셨습니까?(1·2등급 필수)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제9-9조, 연구시설 안전관리 등]

① 임명(2-1-1 작성) ② 미임명(2-1-2 작성)

2-1-2. 미임명 사유

- ① 인력 변동(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일시적 미임명
- ② 법 인지 부족(임명 필수인지 모름)
- ③ 인력부족, 업무기피 등 임명을 위한 적정인원이 없어서
- ④ 연구시설 폐쇄 예정(1개월 이내)

<작성 가이드>

◆ 작성기준 : **현재(작성일) 기준**

□ 2-1.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여부 선택

- '임명' 선택 시 2-1-1 작성
- '미임명' 선택 시 2-1-2 작성

2. 생물안전관리 인력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문항>

2-1-1. 기관의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현황을 작성해 주십시오.

임명 수	①1명 ②2명 ③3명 ④4명 ⑤기타(필수선택 / 5~ 선택박스)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정보				
성명	○메일링 서비스 희망(선택사항)			
연락처	Office/H.P.			
	E-mail			
소속부서 분류	①연구분야 ②행정분야 ③시설·안전관리분야 ④기타분야(____)			
직책	(교수, 책임연구원, 과장, 연구원 등)			
임명일 (임기표기)	임명일	달력 입력 제공		
	임기	①1년 ②2년 ③3년 ④4년 ⑤5년 ⑥별도임기없음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에 따른 임명 자격기준	선택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기준		
	①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 수의학, 의학 등 보건 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②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 수의학, 의학 등 보건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실무		
	③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4년 이상 실무		
	교육이수 여부	신규교육(8시간)	①이수 ②미이수 ③이수 예정	
①			이수	①2021년 이전 ②2022년 ③2023년 ④2024년 ⑤2025년 ⑥2026년
보수교육(4시간)		'25년 이수 여부	①↳ ①매년 이수 ②비정기적 이수	
		①이수 미이수		
교육이수기관	①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연구실LMO안전교육시스템) 교육 ②질병관리청(생물안전협회) 등 타부처 교육			
'25년 '교육이수증' 첨부	'25년 책임자(신규 또는 보수) 교육이수증 이미지파일 업로드			
업무 전담 여부	①생물안전관리책임자 업무만 담당 ②연구, 행정, 교육, 시설안전 등 타 업무와 겸직			

<작성 가이드>

◆ 작성기준 : 현재(작성일) 기준

□ 2-1-1.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정보 작성

- 임명 수 : 기관 내 임명되어 있는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수 선택 후 임명된 전체 인원의 정보 작성
- 메일링 서비스 희망 : 법 개정사항, 교육개최 등 정보 수신을 희망하는 경우 선택
- 소속부서 분류 :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소속부서가 포함되는 분야 선택
 - 연구분야 : 교수, 연구소 소속 등
 - 행정분야 : 학술부서, 연구지원부서 등
 - 시설·안전관리분야 : 시설관리부서, 연구안전부서 등
- 직책 : 교수, 책임연구원, 과장 등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기관 내 직책 작성
- 임명기준 : 통합고시 별표9-9(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요건)에 따른 내용으로 해당하는 자격기준 선택, 중복 해당하는 경우 상위보기 선택('가', '나' 모두 해당 시 '가' 선택)
- 교육이수 : 신규·보수교육 이수 여부 선택, '25년 생물안전관리책임자·관리자 교육 이수증 첨부
 - ※ 신규교육(8시간) '이수' 선택 시 '이수연도' 선택 필요
 - 보수교육(4시간) '25년 교육이수 여부' 선택 후 '매년 이수' 또는 '특정년도 이수' 선택 필요
- 업무 전담 여부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업무전담이란 생물안전관리책임자가 연구, 행정 등 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는 생물안전관리 업무에 포함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기준】

※ LMO 연구시설 보유 기관은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필수(21년 6월~)

※ 기관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및 지정 기준(통합고시 별표9-9)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 수의학, 의학 등 보건 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한 후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이상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 수의학, 의학 등 보건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이상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이상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2. 생물안전관리 인력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문항>

2-2. 귀 기관에서는 생물안전관리자를 지정하십니까?(1-2등급 권장)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제9-9조, 연구시설 안전관리 등]

①지정(2-2-1 이하 작성) ②미지정

2-2-1. 1, 2등급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생물안전관리자 지정은 권장사항입니다.
기관 내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지정 필수 대상 기관(3등급 이상 연구시설 보유)
- ②법 인지 부족(지정 필수라고 생각해서)
- ③다수의 연구시설·연구자 관리 등 기관 내 생물안전관리 체계화를 위해
- ④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 실무수행 불가에 따른 업무대행 필요
- ⑤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을 대신하여

<작성 가이드>

◆ 작성기준 : **현재(작성일) 기준**

2-2.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여부 선택

- '지정' 선택 시 2-2-1, 2-2-2 작성

2-2-1.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목적 선택

2. 생물안전관리 인력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문항>

2-2-2-1. 기관의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현황을 작성해 주십시오.

지정 수	①1명 ②2명 ③3명 ④4명 ⑤기타(필수선택 / 5~ 선택박스)				
생물안전관리자 정보					
성명	○ 메일링 서비스 희망(선택사항)				
연락처	Office/H.P.				
	E-mail				
소속부서 분류	①연구분야 ②행정분야 ③시설·안전관리분야 ④기타분야()				
직책	(교수, 책임연구원, 과장, 연구원 등)				
지정일 (입기표기)	임명일	달력 입력 제공			
	입기	①1년 ②2년 ③3년 ④4년 ⑤5년 ⑥별도입기없음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에 따른 임명 자격기준	선택	생물안전관리자 지정기준			
	①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			
	②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실무			
	③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건축설비, 전기공사, 공조냉동, TAB 등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보유			
	④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 수의학, 의학 등 보건 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⑤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 수의학, 의학 등 보건 관련 학과 졸업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실무			
	⑥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4년 이상 실무			
	⑦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6년 이상 실무			
교육이수 여부	신규교육(8시간)	①	이수	①2021년 이전 ②2022년 ③2023년 ④2024년 ⑤2025년 ⑥2026년	
		↳			
	보수교육(4시간)	'25년 이수 여부		①↳ ①매년 이수 ②비정기적 이수	
		①이수 미이수			
교육이수기관	①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연구실 LMO 안전교육시스템 교육 ② 질병관리청(생물안전협회) 등 타부처 교육				
'25년 교육이수증 첨부	'25년 책임자((신규 또는 보수) 교육이수증 이미지파일 업로드				
업무 전담 여부	① 생물안전관리자 업무만 담당 ② 연구, 행정, 교육, 시설안전 등 타 업무와 겸직				

<작성 가이드>

◆ 작성기준 : 현재(작성일) 기준

□ 2-2-2. 생물안전관리자 정보 작성

○ (9p) 2-1-1 입력 기준과 동일

【생물안전관리자 임명 기준】

※ 안전관리 3등급 이상 LMO 연구시설 보유 기관은 생물안전관리자 임명 필수

※ 기관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및 지정 기준(통합고시 별표9-9)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이상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이상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건축설비, 전기공사, 공조냉동, TAB 등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이상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 수의학, 의학 등 보건 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한 후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이상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 수의학, 의학 등 보건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이상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이상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이상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2. 생물안전관리 인력 (생물안전관리 실무자)

<문항>

2-3. 귀 기관의 LMO 안전관리를 위한 실무자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실무자는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자를 제외하고 LMO 신고 업무 등 안전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분을 의미합니다.)

- ①지정(2-3-1, 2-3-2 작성) ②미지정

2-3-1. 기관 내 생물안전관리 실무자 지정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 실무수행 불가에 따른 업무대행 필요
- ②연구시설, 연구자 등 다수의 대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 ③신고, 연구시설 관리·감독, 교육 실시 등 체계적인 생물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 ④다수의 안전관리 담당자가 필요하나,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추가 임명(지정)의 부담으로

2-3-2-1. 기관 LMO 안전관리 실무자에 대한 정보를 작성해 주십시오.

지정 수	①1명 ②2명 ③3명 ④4명 ⑤기타(필수선택 / 5~ 선택박스)			
LMO 안전관리 실무자 정보				
성명	○메일링 서비스 희망(선택사항)			
연락처	Office/H.P.			
	E-mail			
소속부서 분류	①연구분야 ②행정분야 ③시설·안전관리분야 ④기타분야(_____)			
교육이수여부	①관리자 신규교육(8시간) 이수		②관리자 보수교육(4시간) 이수	
	③종사자 교육(2시간) 이수		④기타(_____)	
	⑤종사자 교육(2시간) 이수			
담당 업무 (중복선택가능)	①시설신고		②수입신고	
	③IBC 구성·운영		④LMO 안전교육 운영·이수관리	
	⑤생물안전 정보수집 및 기관 내 제공		⑥시설 안전관리 이행 감독	
	⑦기타(_____)			

<작성 가이드>

◆ 작성기준 : 현재(작성일) 기준

□ 2-3. 생물안전관리 실무자 지정 여부 선택

- 생물안전관리 실무자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자로 임명(지정) 받은 분 외 LMO 신고 업무 등 안전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의미합니다.
- '지정' 선택 시 2-3-1, 2-3-2 작성

□ 2-3-1. 생물안전관리 실무자 지정 목적 선택

□ 2-3-2. 생물안전관리 실무자 정보 작성

- 메일링 서비스 희망 : 법 개정사항, 교육개최 등 정보 수신을 희망하는 경우 선택
- 소속부서 분류 : LMO 안전관리 실무담당자의 소속부서 분류 선택
 - 연구분야 : 교수, 연구소 소속 등
 - 행정분야 : 학술부서, 연구지원부서 등
 - 시설/안전관리분야 : 시설관리부서, 연구실안전부서 등
- 교육이수 : 생물안전교육 이수 여부와 이수한 교육 종류 선택
- 담당업무 : 생물안전관리 실무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모두 선택

3. 생물(LMO)안전교육 (교육·훈련)

<문항>

3-1. 귀 기관에서는 2025년도 LMO 연구활동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1·2등급 필수)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제9-9조, 연구시설 안전관리 등]
 (정부부처 교육 이수 및 활용 역시 교육 실시로 간주합니다)

- ①실시(3-2 작성) ②미실시(3-1-1 작성)

3-1-1. 미실시 사유

- ①법 인지 부족(실시 의무를 몰라서)
 ②연구시설 미운영

3-2.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실시 방법을 선택해 주십시오.(중복선택 가능)

- ①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연구실·LMO안전교육시스템) 교육 활용(3-2-1 작성)
 ②기관 자체교육 실시(3-2-2 작성)
 ③한국생물안전협회 등 타 부처 교육 활용(교육기관 : 필수선택/선택박스)
 ④기타(_____)

3-2-1. 기관에서 활용한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교육은 무엇입니까?(중복선택 가능)

- ①집합 교육
 ②찾아가는 교육
 ③온라인 교육(연구실·LMO안전교육시스템)

3-2-2. 기관 자체교육 실시 방법은 무엇입니까?(중복선택 가능)

- ①집합 교육(3-2-3 작성)
 ②온라인 교육(3-2-4 작성)

<작성 가이드>

◆ 작성기준 : 2025년 12월

□ 3-1.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실시 여부 선택

- '실시' 선택 시 3-2 작성
- '미실시' 선택 시 3-1-1 작성

□ 3-2. 교육 실시 방법 선택

[단어 뜻 설명]

- **자체교육** : 기관 자율적으로 내·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는 교육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공동활용 신청)받아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연구실·LMO안전교육시스템) 교육**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직접 개최하는 교육, 선택 시 3-2-1 작성
- **기관 자체교육** : 기관 내부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선택 시 3-2-2 작성
- **타 부처 교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외 부처에서 실시하는 교육
 * 생물안전협회, 보건복지인력개발원, KIRD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LMO 안전교육 실시 기관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3-1-1.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미실시 사유 선택

□ 3-2-1.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교육 중 활용한 교육 선택

□ 3-2-2. 기관 자체교육 시 실시한 방법 선택

- '집합' 선택 시 3-2-3 작성
- '온라인' 선택 시 3-2-4 작성

3. 생물(LMO)안전교육 (교육·훈련)

<문항>

3-2-3. 기관 자체교육(집합) 시 강사 활용 방법은 무엇입니까?(중복선택 가능)

- ①기관 내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생물안전관리자(전문강사 양성교육 이수여부Y□/N□)
- ②기관 내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활동종사자(전문강사 양성교육 이수여부Y□/N□)
- ③외부 강사(전문강사 양성교육 이수여부Y□/N□)

3-2-4. 기관 자체교육(온라인) 시 활용하는 콘텐츠는 무엇입니까?(중복선택 가능)

- ①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온라인 콘텐츠 공동활용 신청
- ②기관 자체 제작
- ③외부업체의 콘텐츠를 구매하여 활용(기관명 : 필수작성)
- ④기타(_____)

3-3. 귀 기관에서는 연구활동종사자의 LMO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 ①확인(3-3-1 작성) ②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책임자 등 일부확인(3-3-1 작성) ③미확인

3-3-1. 교육 미이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관리방법(제재조치 포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①마련(3-3-1-1 작성) ②마련되지 않음

3-3-1-1. 관리방법(중복선택 가능)

- ①연구활동제한(연구실 출입제한 등)
- ②인사 또는 졸업 등 불이익
- ③소속 부서(학과 등) 평가(지원 등) 불이익
- ④기관 내 교육 (추가)개최
- ⑤부처 교육 지속 홍보
- ⑥기타(_____)

<작성 가이드>

◆ 작성기준 : 2025년 12월

□ 3-2-3. 기관 자체교육 강사 활용 방법 선택

- 강사의 LMO 안전 전문강사 양성교육 이수여부 선택

□ 3-2-4. 기관 자체교육 활용 콘텐츠 종류 선택

- 외부업체 콘텐츠 구매 : LMO 안전교육 콘텐츠를 외부업체에서 구매하는 경우 구매기관명 필수 작성

□ 3-3. 기관 내 교육이수 관리 여부 선택

- '확인', '일부확인' 선택 시 3-3-1 작성

□ 3-3-1. 교육 미이수 관리방안 마련 여부 선택

- '마련' 선택 시 3-3-1-1 작성

□ 3-3-1-1. 관리방법 선택

3. 생물(LMO)안전교육 (교육·훈련)

<문항>

3-4. 귀 기관의 2025년 LMO 연구시설 사용자(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이수 현황을 작성해 주십시오
(본 문항은 연구활동종사자 현황값(1-2) 및 연구시설 현황조사 응답값과 연동됩니다)

구분		교육 대상 인원(명)	교육 이수 인원(명)	이수율(%)
대학	설치·운영책임자	연동	연동	자동입력
	교수, 연구교수 (설치·운영책임자 미포함)	연동	연동	자동입력
	연구원(postdoc 포함)	연동	연동	자동입력
	대학원생(석·박사)	연동	연동	자동입력
	실습 조교	연동	연동	자동입력
	학사 과정	연동	연동	자동입력
	기타	연동	연동	자동입력
계		자동입력	자동입력	자동입력

<작성 가이드>

◆ 작성기준 : 2025년 12월

【단어 뜻 설명】

- 연구시설 사용자 : 신고된 LMO 연구시설을 이용하는 자(연구활동종사자 보다 넓은 의미)
- 학사 과정 : LMO 연구시설에서 실험·실습 강의를 받는 학부생 및 상주학생 모두 포함

□ 3-4.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이수 현황

- 1-2의 연구활동종사자 입력값과 자동연동(교육 대상 인원)되며, '연구시설 현황조사 데이터 불러오기' 버튼 클릭 시 기관 내 연구시설 현황조사 입력값이 취합되어 연동(교육 이수 현황)
※ 불러온 데이터는 직접 수정 가능

4. LMO 안전관리 조직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

<문항>

4-1. 귀 기관은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가 구성되어 있습니까?(1등급 권장, 2등급 필수)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별표9-1~6],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

(본 문항은 '전년도 데이터 불러오기'를 통해 자동 입력됩니다)

- ① 구성(4-1-2 작성)
- ② 미구성(4-1-1 작성)

4-1-1.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 미구성 사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구성 의무 없음(1등급 연구시설만 보유)
- ② 법 인지 부족(구성 의무를 몰라서)
- ③ 기관생물안전위원회 불필요하다 판단(사유 : _____)
- ④ 구성 인력 또는 예산 부족(4-1-1-1 작성)
- ⑤ 기타(_____)

4-1-1-1. IBC 위탁 시도 여부

- ① 위탁 시도했으나 위탁 가능 기관 없음
- ② 위탁 시도했으나 기관 간 위탁 조건 안맞음
- ③ 위탁 시도하지 않음

4-1-2. 구성형태

- ① 기관 내 단독 구성·운영(위원 전임)(4-2, 4-3 작성)
- ② 기관 내 단독 구성·운영(타 위원회와 위원 겸임)(4-2, 4-3 작성)
- ③ 타 위원회와 공동 구성·운영(4-2, 4-3 작성)(선택문항)
- ④ 외부 IBC에 위탁하여 구성(4-1-2-1 작성)

4-1-2-1. IBC 위탁 사유

- ① 본교(또는 캠퍼스) 등 관계기관의 IBC 공동활용
- ② 구성 인력 또는 예산 부족
- ③ 자체 구성 가능하나 업무 전문화(효율화)를 위해 위탁

<작성 가이드>

◆ 작성기준 : 현재(작성일) 기준

□ 4-1.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 구성 여부 선택

※ '전년도 응답값 불러오기' 클릭 시 전년도(2025년) 답변 자동 입력(변동사항 발생 시 수정 필수), 전년도 '미구성'(또는 '구성예정')으로 응답한 경우 직접 작성 필수

- '구성' 선택 시 4-1-2 작성
- '미구성' 선택 시 4-1-1 작성

□ 4-1-1. IBC 미구성 사유 선택

- '기관생물안전위원회 불필요하다 판단' 선택 시 해당 사유 작성
- '인력 및 예산부족' 선택 시 위탁 시도 여부 작성

□ 4-1-1-1. IBC 위탁 시도 여부 선택

□ 4-1-2. 구성 형태 선택

- '구성·운영' 선택 시 4-2, 4-3 작성
- '공동 구성·운영' 선택 시 공동으로 운영되는 타 위원회(동물실험윤리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등) 선택
- '외부 IBC에 위탁하여 구성' 선택 시 4-1-2-1 작성

□ 4-1-2-1. IBC 위탁 사유 선택

4. LMO 안전관리 조직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

<문항>

4-3-2. 미운영 사유

- ①기관 내 실험 모두 면제실험 대상
- ②기관 내 실험 없음
- ③연구자 인식 부족(연구자가 심의신청 하지 않아 운영 불가)
- ④예산 및 인력 부족
- ⑤2026년 IBC 신규 구성
- ⑥연구시설 폐쇄 예정(1개월 이내)

<작성 가이드>

◆ 작성기준 : 2025년 12월

□ 4-3-2. IBC 미운영 사유 선택

4. LMO 안전관리 조직 (LMO 안전관리 부서)

<문항>

4-5. 귀 기관에는 생물안전관리 업무만을 담당하는 전담조직(부서)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전담조직은 연구, 행정 등 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생물안전관리 업무만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①설치(부서명 : _____) ②미설치(4-5-1 작성)

4-5-1. 생물안전관리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 기관 내 생물안전관리 업무 담당 부서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LMO 취급(시험, 연구 등) 부서(연구시설)에서 담당(부서명 : _____)
- ② 기획·지원, 학술 등 행정 부서에서 담당(부서명 : _____)
- ③ 시설관리 부서에서 담당(부서명 : _____)
- ④ 연구실 안전 관련 부서에서 담당(부서명 : _____)
- ⑤ 일반(non-LMO) 연구부서에서 담당(부서명 : _____)

<작성 가이드>

◆ 작성기준 : **현재(작성일) 기준**

□ 4-5. 생물안전관리 전담조직 설치 여부 선택

- 전담조직 : 생물(LMO) 안전관리 업무만을 담당하는 부서를 의미합니다.(기관생물안전위원회 제외)
※ 전담조직 예시 : 생물(LMO) 안전센터 또는 연구안전부서 내 LMO팀 별도 구성 등
- '미설치' 선택 시 4-5-1 작성

□ 4-5-1. 생물안전관리 담당 부서 분류 선택

- LMO 취급(시험, 연구 등) 부서 : 연구부서 또는 특정 학과에서 담당하는 경우 선택
- 행정부서 : 행정실, 산학협력단 등에서 담당하는 경우 선택
- 시설관리부서 : 학교 내 시설관리팀에서 담당하는 경우 선택
- 연구실 안전 관련 부서 : 생물안전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은, 연구실안전부서에서 담당하는 경우 선택
- 일반(non-LMO) 연구부서 : LMO를 취급하지 않는 일반 연구부서 등에서 담당하는 경우 선택

5. 안전관리 규정 및 지침 (생물안전관리지침 / 생물안전규정)

<문항>

5-1. 귀 기관에는 '생물안전관리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까?(1등급 권장, 2등급 필수)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별표9-1~6],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

- ① 제정(5-1-1 작성) ② 미제정(5-1-2 작성)

5-1-1. '생물안전관리규정'은 어떤 형태로 제정되어 있습니까?

- ① 기관 내 생물안전관리규정 별도 제정
② 기관 내 타 규정과 함께 구성
③ 본교(또는 캠퍼스), 모회사 등 관계기관의 매뉴얼 활용

5-1-2. 미제정 사유

- ① 제정 의무 없음(1등급 연구시설만 보유)
② 법 인지 부족(제정 필수인지 모름)
③ 제정(작성) 방법 모름

5-2. 귀 기관에는 '생물안전지침'이 제정되어 있습니까?(1등급 권장, 2등급 필수)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별표9-1~6],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

- ① 제정(5-2-1 작성) ② 미제정(5-2-2 작성)

5-2-1. '생물안전지침'은 어떤 형태로 제정되어 있습니까?

- ① 기관 내 생물안전지침 별도 제정
② 기관 내 타 규정 또는 지침에 포함
③ 본교(또는 캠퍼스), 모회사 등 관계기관의 매뉴얼 활용

5-2-2. 미제정 사유

- ① 제정 의무 없음(1등급 연구시설만 보유)
② 법 인지 부족(제정 필수인지 모름)
③ 제정(작성) 방법 모름

<작성 가이드>

◆ 작성기준 : **현재(작성일) 기준**

※ '전년도 응답값 불러오기' 클릭 시 전년도(2025년) 답변 자동 입력(변동사항 발생 시 수정 필수), 전년도 '미제정'(또는 '제정예정')으로 응답한 경우 직접 작성 필수

□ 5-1. 생물안전관리규정 제정 여부 선택

- '제정' 선택 시 5-1-1 작성
 ※ 타 규정에 포함하여 제정하는 경우에도 '제정' 선택
- '미제정' 선택 시 5-1-2 작성

□ 5-1-1. 생물안전관리규정 제정 방법 선택

□ 5-1-2. 미제정 사유 선택

□ 5-2. 생물안전지침 제정 여부 선택

- '제정' 선택 시 5-2-1 작성
 ※ 타 규정에 포함하여 제정하는 경우에도 '제정' 선택
- '미제정' 선택 시 5-2-2 작성

□ 5-2-1. 생물안전지침 제정 방법 선택

□ 5-2-2. 미제정 사유 선택

【규정 관련 안전관리 등급별 필수 및 권장사항】

항목	연구시설 안전관리등급	
	1	2
생물안전관리규정	권장	필수
생물안전관리지침	권장	필수
비상조치매뉴얼	필수	필수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방안	필수	필수
폐기물처리규정	필수	필수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 규정	선택	선택

5. 안전관리 규정 및 지침 (비상대응체계 / 날카로운 도구 관리방안)

<문항>

5-3. 귀 기관에는 '비상대응체계(비상조치매뉴얼)'가 마련되어 있습니까?(1·2등급 필수)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별표9-1~6],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

- ①마련(5-3-1 작성) ②미마련(5-3-2 작성)

5-3-1. '비상대응체계(비상조치매뉴얼)'는 어떤 형태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 ①기관 내 비상대응체계 별도 마련
②기관 내 타 규정 또는 지침에 포함
③본교(또는 캠퍼스), 모회사 등 관계기관의 매뉴얼 활용

5-3-2. 미마련 사유

- ①법 인지 부족(마련 필수인지 모름)
②마련(작성) 방법 모름

5-4. 귀 기관에는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1·2등급 필수)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별표9-1~6],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

- ①마련(5-4-1 작성) ②미마련(5-4-2 작성)

5-4-1.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방안'은 어떤 형태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 ①기관 내 관리방안 별도 마련
②기관 내 타 규정 또는 지침에 포함
③본교(또는 캠퍼스), 모회사 등 관계기관의 매뉴얼 활용

5-4-2. 미마련 사유

- ①법 인지 부족(마련 필수인지 모름)
②마련(작성) 방법 모름

<작성 가이드>

◆ 작성기준 : 현재(작성일) 기준

※ '전년도 응답값 불러오기' 클릭 시 전년도(2025년) 답변 자동 입력(변동사항 발생 시 수정 필수), 전년도 '미미란'(또는 '마련예정')으로 응답한 경우 직접 작성 필수

□ 5-3. 비상대응체계(비상조치매뉴얼) 마련 여부 선택

- '마련' 선택 시 5-3-1 작성
 ※ 타 규정에 포함하여 마련하는 경우에도 '마련' 선택
- '미마련' 선택 시 5-3-2 작성

□ 5-3-1. 비상대응체계(비상조치매뉴얼) 마련 방법 선택

□ 5-3-2. 미마련 사유 선택

□ 5-4.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여부 선택

- '마련' 선택 시 5-4-1 작성
 ※ 타 규정에 포함하여 마련하는 경우에도 '마련' 선택
- '미마련' 선택 시 5-4-2 작성

□ 5-4-1.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방법 선택

□ 5-4-2. 미마련 사유 선택

【규정 관련 안전관리 등급별 필수 및 권장사항】

항목	연구시설 안전관리등급	
	1	2
생물안전관리규정	권장	필수
생물안전관리지침	권장	필수
비상조치매뉴얼	필수	필수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방안	필수	필수
폐기물처리규정	필수	필수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 규정	선택	선택

5. 안전관리 규정 및 지침 (폐기물 처리 규정 / IBC 규정)

<문항>

5-5. 귀 기관에는 '실험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까?(1·2등급 필수)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별표9-1~6],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

- ① 제정(5-5-1 작성) ② 미제정(5-5-2 작성)

5-5-1. '실험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은 어떤 형태로 제정되어 있습니까?

- ① 기관 내 폐기물 처리 규정 별도 제정
- ② 기관 내 타 규정 또는 지침에 포함
- ③ 본교(또는 캠퍼스), 모회사 등 관계기관의 매뉴얼 활용

5-5-2. 미제정 사유

- ① 법 인지 부족(마련 필수인지 모름)
- ② 마련(작성) 방법 모름

5-6. 귀 기관에는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 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까?(선택)

- ① 제정(5-6-1 작성) ② 미제정(5-6-2 작성)

5-6-1. 'IBC 규정'은 어떤 형태로 제정되어 있습니까?

- ① 기관 내 IBC 규정 별도 제정
- ② 기관 내 타 규정 또는 지침에 포함
- ③ 본교(또는 캠퍼스), 모회사 등 관계기관의 매뉴얼 활용

5-6-2. 미제정 사유

- ① 제정 의무 없음
- ③ 제정(작성) 방법 모름

<작성 가이드>

◆ 작성기준 : 현재(작성일) 기준

※ '전년도 응답값 불러오기' 클릭 시 전년도(2025년) 답변 자동 입력(변동사항 발생 시 수정 필수), 전년도 '미제정'(또는 '제정예정')으로 응답한 경우 직접 작성 필수

□ 5-5. 실험폐기물 처리 규정 제정 여부 선택

- '제정' 선택 시 5-5-1 작성
 - ※ 타 규정에 포함하여 제정하는 경우에도 '제정' 선택
- '미제정' 선택 시 5-5-2 작성

□ 5-5-1. 실험폐기물 처리 규정 제정 방법 선택

□ 5-5-2. 미제정 사유 선택

□ 5-6.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 규정 제정 여부 선택

- '제정' 선택 시 5-6-1 작성
 - ※ 타 규정에 포함하여 제정하는 경우에도 '제정' 선택
- '미제정' 선택 시 5-6-2 작성

□ 5-6-1.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 규정 제정 방법 선택

□ 5-6-2. 미제정 사유 선택

【규정 관련 안전관리 등급별 필수 및 권장사항】

항목	연구시설 안전관리등급	
	1	2
생물안전관리규정	권장	필수
생물안전관리지침	권장	필수
비상조치매뉴얼	필수	필수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방안	필수	필수
폐기물처리규정	필수	필수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 규정	선택	선택

6. LMO 취급·관리 (LMO 표시)

<문항>

6-1. 귀 기관은 LMO 운반 시 용기 또는 포장(수입송장)에 LMO임 표시하고 있습니까?(1·2등급 필수)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24조, 표시]

- ① 표시함(6-1-1 작성) ② 표시하지 않음(6-1-2 작성)

6-1-1. LMO 정보를 표시하는 경우, 표시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 ① 모든 항목 표시 ② 일부 항목 표시(6-1-1-1 작성)

6-1-1-1. 표시항목 선택(중복선택 가능)

- ① LMO 명칭·종류·용도 및 특성
- ② LMO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주의사항
- ③ LMO의 개발자 또는 생산자,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 ④ LMO에 해당하는 사실
- ⑤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LMO 해당 여부

6-1-2. 표시하지 않는 사유

- ① 법 인지 부족(표시 필수 미인지 또는 표시 방법 모름)
- ② 표시 필요 없다고 판단함(사유 : _____)
- ③ 표시해야 하는 내용이 과하다고 판단함
- ④ LMO를 취급하지 않음(6-3 작성)

<작성 가이드>

◆ 작성기준 : **현재(작성일) 기준**

□ 6-1. LMO 표시 여부 선택

※ '전년도 응답값 불러오기' 클릭 시 전년도(2025년) 답변 자동 입력(변동사항 발생 시 수정 필수), 전년도 '표시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경우 직접 작성 필수

- '표시함' 선택 시 6-1-1 작성
- '표시하지 않음' 선택 시 6-1-2 작성
- LMO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사유(6-3) 선택

□ 6-1-1. LMO 표시 항목 선택

- 일부 항목만 표시하는 경우 6-1-1-1 선택

□ 6-1-1-1. 세부 표시항목 선택

□ 6-1-2. LMO 표시 미이행 사유 선택

6. LMO 취급·관리 (취급·관리 법적사항 준수)

<문항>

6-2. 귀 기관은 LMO를 취급·관리를 위한 법적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까?(1·2등급 필수)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25조, 취급관리]

- ① 준수(6-2-1 작성) ② 미준수(6-2-2 작성)

6-2-1. LMO 취급·관리 사항 중 준수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모든 항목 준수 ② 일부 항목 준수(6-2-1-1 작성)

6-2-1-1. 준수항목 선택(중복선택 가능)

- ① LMO 운반 시 밀폐하고 용기 또는 포장에 파손되지 않도록 운송
- ② LMO는 특성이 유지될 수 있는 적합한 시설에 보관하며 취급·관리 전담자 또는 책임자 지정하여 관리
- ③ LMO 취급·관리를 위한 설비를 적정하게 유지·관리
- ④ LMO 취급 시 주의사항 마련·배포 및 준수
- ⑤ LMO 취급·관리대장('19.12 개정) 등 작성하여 보관
- ⑥ LMO를 폐기할 경우 생물학적 활성 제거 후 폐기
- ⑦ LMO의 비의도적 환경방출 시 위해방지를 위한 비상조치방법 마련

6-2-2. 미준수 사유

- ① 법 인지 부족(취급·관리 필수 미인지 또는 취급·관리 방법 모름)
- ② 취급·관리 필요 없다고 판단함(사유 : _____)
- ③ LMO를 취급하지 않음(6-3 작성)

6-3. LMO를 취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 ① LMO 연구 일시적 중단(향후 LMO 취급 예정)
- ② LMO 연구 종료(향후 LMO 취급 계획 없음)
- ③ LMO 연구를 계획했으나, LMO 연구 미실시(향후 LMO 취급 예정)
- ④ LMO 연구를 계획했으나, LMO 연구 미실시(향후 LMO 취급 계획 없음)
- ⑤ LMO 연구 계획이 없으며, 연구시설 안전관리등급을 부여받기 위해 LMO 연구시설 신고

<작성 가이드>

◆ 작성기준 : **현재(작성일) 기준**

[단어 뜻 설명]

- 생물학적 활성 제거 : 고압증기멸균처리 또는 화학적처리(락스 등) 등으로 LMO 활성을 제거하는 것
※ LMO 종류 및 특성에 따른 생물학적 활성 제거방법 인정(설치류 - 사체 냉동보관 등)

6-2. LMO 취급·관리 준수 여부 선택

※ '전년도 응답값 불러오기' 클릭 시 전년도(2025년) 답변 자동 입력(변동사항 발생 시 수정 필수), 전년도 '미준수'로 응답한 경우 직접 작성 필수

- '준수' 선택 시 6-2-1 작성
- '미준수' 선택 시 6-2-2 작성
- LMO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사유(6-3) 선택

6-2-1. LMO 취급·관리 준수 항목 선택

- '일부 항목' 선택 시 준수 항목 선택

6-2-1-1. 세부 준수항목 선택

6-2-2. LMO 취급·관리 미준수 사유 선택

6-3. LMO 미취급 사유 선택

6. LMO 취급·관리 (폐기물 처리)

<문항>

6-4. 귀 기관의 LMO 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합니까?(1-2등급 필수)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별표9-1~6],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

- ① 모든 LMO의 활성 제거(6-4-1 작성)
- ② 일부 LMO에 대해 활성 제거(6-4-1, 6-4-2 작성)
- ③ 활성 제거 하지 않음(6-4-3 작성)

6-4-1. 생물학적 활성 제거 방법(중복선택 가능)

- ① 고압 증기 멸균처리
- ② 화학약품(락스 등) 활용
- ③ 냉동처리
- ④ 기타(_____)

6-4-2. LMO 폐기물 일부만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생물학적 활성 제거 필요 없다고 판단함
- ② 대량배출 등 생물학적 활성 제거할 수 없음
- ③ 고압증기멸균처리가 불가능한 폐기물이라고 판단함

6-4-3. 미제거 사유

- ① 법 인지 부족(활성 제거 필수인지 모름)
- ② 활성 제거 방법 모름
- ③ 활성 제거 필요 없다고 판단함(사유 : _____)
- ④ 고압증기멸균처리가 불가능한 폐기물이라고 판단함
- ⑤ 의료폐기물로 (위탁)처리
- ⑥ LMO를 취급하지 않음(6-5 ~6-6-1문항 생략)

<작성 가이드>

◆ 작성기준 : 현재(작성일) 기준

【단어 뜻 설명】

- 보관시설 : LMO 폐기물(생물학적 활성 제거 전, 후) 보관장소가 있는 시설(연구시설 포함)

□ 6-4. LMO 폐기물 생물학적 활성 제거 여부 선택

- '모두 LMO 활성 제거' 선택 시 6-4-1 작성
- '일부 LMO 활성 제거' 선택 시 6-4-1, 6-4-2 작성
- '미제거' 선택 시 6-4-3 작성

□ 6-4-1. 생물학적 활성 제거 방법 선택

□ 6-4-2. 생물학적 활성 일부 제거 사유 선택

□ 6-4-3. 생물학적 활성 미제거 사유 선택

6. LMO 취급·관리 (폐기물 처리)

<문항>

6-5. 귀 기관에는 LMO 폐기물 보관시설이 지정되어 있습니까?(1-2등급 필수)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별표9-1~6],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

6-5-1. LMO 생물학적 활성제거 전

- ① LMO 연구시설 내부 보관
- ② 보관시설 별도 지정(LMO 연구시설로 신고)
- ③ 보관시설 별도 지정(LMO 연구시설로 미신고)
- ④ 보관시설 별도 지정 없음
- ⑤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생물학적 활성 제거

6-5-2. LMO 생물학적 활성제거 후

- ① LMO 연구시설 내부 보관
- ② 보관시설 별도 지정(LMO 연구시설로 신고)
- ③ 보관시설 별도 지정(LMO 연구시설로 미신고)
- ④ 보관시설 별도 지정 없음

6-6. 귀 기관의 LMO 폐기물 처리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폐기물 처리 업체 위탁(6-6-1 작성)
- ② 기관 내 소각, 매립을 통한 자체 처리
- ③ 폐기물 위탁처리 없이 일반쓰레기로 처리
- ④ LMO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음

6-6-1. LMO 폐기물 수거 주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수거 주기는 폐기물 위탁업체가 기관 방문 후 재방문 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함)

- ① 1주 이내 ② 1~2주 ③ 2~3주 ④ 3~4주
- ⑤ 별도의 주기 없으며 폐기물 발생 즉시 수거
- ⑥ 별도의 주기 없으며 폐기물 양에 따른 수거(일정량이 되면 수거)
- ⑦ 기타(_____)

<작성 가이드>

◆ 작성기준 : 현재(작성일) 기준

[단어 뜻 설명]

- 폐기물 처리 : LMO 생물학적 활성 제거 이후 처리 과정
 - 위탁 처리 :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 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처리
 - 소각, 매립 처리 : 기관 자체적인 소각장 또는 매립지를 보유하여 기관 내부적으로 소각·매립 하는 경우

□ 6-5-1, 6-5-2. LMO 보관시설 선택

- 생물학적 활성 제거 전·후 LMO 보관장소 별도 선택

□ 6-6. LMO 폐기물 처리 방법 선택

- '위탁' 선택 시 6-6-1 작성
- 소각, 매립 처리 : 기관 자체 소각장 및 매립지를 활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선택

□ 6-6-1. 폐기물 수거 주기 선택

6. LMO 취급·관리 (LMO 연구시설 내 사고)

<문항>

6-7. 2025년 한 해 동안 기관 내 LMO 연구시설에서 발생한 LMO 관련 사고가 있습니까?

- ① 발생(6-7-1작성)
- ② 미발생

6-7-1. 2025년 LMO 연구시설 내 발생한 LMO 관련 사고 현황을 작성해 주십시오.

6-7-1-1. 2025년 사고발생 횟수 1등급 시설

1등급 시설 : 회

연구시설 등급	1등급	
사고 유형 (중복선택 가능)	①LMO 유출(탈출) 사고 ②LMO 감염 사고 ③LM동물에 의한 물림, 할퀴 등 사고 ④LMO 오배송 또는 분실 사고 ⑤기타 LMO 사고()	
사고대응	사용 LMO	(주관식 입력)
	피해 현황	(주관식 입력)
	사고처리 현황	(주관식 입력)

6-7-1-2. 2025년 사고발생 횟수 2등급 시설

1등급 시설 : 회

연구시설 등급	2등급	
사고 유형 (중복선택 가능)	①LMO 유출(탈출) 사고 ②LMO 감염 사고 ③LM동물에 의한 물림, 할퀴 등 사고 ④LMO 오배송 또는 분실 사고 ⑤기타 LMO 사고()	
사고대응	사용 LMO	(주관식 입력)
	피해 현황	(주관식 입력)
	사고처리 현황	(주관식 입력)

<작성 가이드>

◆ 작성기준 : 2025년 12월

【단어 뜻 설명】

- LMO 관련 사고 : LMO 유출, 감염 등 LMO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고

□ 6-7. LMO 연구시설 내 LMO 관련 사고 발생 여부 선택

□ 6-7-1-1, 6-7-1-2. LMO 연구시설 내 발생한 LMO 관련 사고 현황 작성

- LMO 연구시설 내 발생한 LMO 관련 사고 횟수 및 유형 구분하여 작성
※ 사고 유형 중복선택 가능
- 사고발생 LMO 정보, 피해 현황, 기관 내 사고처리 절차 작성

I 7. 기관 안전관리 체계 (홈페이지, 예산)

<문항>

7-1. 귀 기관에는 LMO 안전관리를 위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①구축(7-1-1, 7-1-2 작성) ②미구축 ③구축 중

7-1-1. 기관의 LMO 안전관리 홈페이지 목적은 무엇입니까?(중복선택 가능)

①LMO 시설·수입 등 신고 ②LMO 교육 ③관리대장 작성·보관 등 자체 안전관리
④LMO 정보 게시(규정 등) ⑤IBC 활동(심의 등) ⑥연구활동종사자 관리

7-1-2. 홈페이지URL

홈페이지 URL

직접입력

7-2. 귀 기관은 2025년에 LMO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습니까?

①확보(7-2-1 작성) ②미확보 ③모름

7-2-1. 기관의 LMO 안전관리비 편성 방법을 선택해 주십시오.

(LMO 안전관리비 : 안전장비·보호구 구매비, 교육비, IBC 운영비 등)

①LMO 안전관리 비목으로 편성
②연구실 안전관리 비목에 포함하여 편성
③안전관리 비목 아니지만 LMO 안전 관련하여 사용 가능
④세부사항 별 별도 비목 구성(위원회 운영비 등)
⑤기타(_____)

<작성 가이드>

◆ 작성기준 : **현재(작성일) 기준**

7-1. LMO 안전관리 홈페이지 구축 여부 선택

○ '구축' 선택 시 7-1-1, 7-1-2 작성

7-1-1. 기관 내 홈페이지 구축 목적 선택

7-1-2. 기관 내 홈페이지URL 작성

7-2. 기관 내 안전관리 예산 확보 여부 선택

○ '확보' 선택 시 7-2-1 작성

7-2-1. LMO 안전관리비 편성 방법 작성

7. 기관 안전관리 체계 (LMO 연구시설 임대·임차)

<문항>

7-3. 귀 기관에는 공유실험실을 운영·사용하고 있습니까?

(공유실험실 : 타 기관의 연구시설에 입주하여 연구인프라(실험기기·장비 등)를 이용하는 형태)

① 있음(7-3-1 작성) ② 없음

①	공유실험실 운영 <input type="checkbox"/>	①기관 내 모든 연구시설 ②기관 내 일부 연구시설
	공유실험실 사용 <input type="checkbox"/>	①기관 내 모든 연구시설 ②기관 내 일부 연구시설

7-3-1. 공유실험실의 안전관리 주체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공유실험실 운영기관	공유실험실 사용기관
LMO 연구시설 신고 주체	시설신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수입신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LMO 안전관리 이행 주체	교육 이수 관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BC 구성·운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규정·지침 마련·적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폐기물 처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관리대장 기록·보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시설 안전관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4. 귀 기관에 대한 대면 현장점검을 희망하시나요?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작성 가이드>

◆ 작성기준 : 현재(작성일) 기준

【단어 뜻 설명】

- 공유실험실 : 타 기관의 연구시설에 입주하여 연구인프라(실험기기·장비 등)를 이용하는 형태
- 공유실험실 운영기관 : 기관 내 공유실험실을 구축하여 타 기관에 임대하는 기관
- 공유실험실 사용기관 : 타 기관의 공유실험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기관

□ 7-3. 공유실험실 운영·사용 여부 선택

- '있음' 선택 시 공유실험실 운영·사용 범위 및 7-3-1 작성
 - 기관 내 공유실험실 운영·사용 범위에 따라 '모든' 또는 '일부' 작성

【공유실험실 운영·사용 구분 예시】

- ★ 상황 : A기관은 소유한 공유실험실을 B기관이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수입신고는 B기관에서, IBC 구성·운영 및 규정·지침 마련·적용 사항은 A기관에서 마련된 내용을 활용(적용)하고 있음
- (A기관 응답) 7-3 공유실험실 운영·사용 현황 '있음' 및 '공유실험실 운영' 체크 후 하위문항 작성
 - 7-3-1 시설신고, 수입신고 주체는 '공유실험실 사용기관(B기관)' 선택
 - 7-3-1 IBC 구성·운영, 규정·지침 마련·적용 주체는 '공유실험실 운영기관(A기관)' 선택
- (B기관 응답) 7-3 공유실험실 운영·사용 현황 '있음' 및 '공유실험실 사용' 체크 후 하위문항 작성
 - 7-3-1 시설신고, 수입신고 주체는 '공유실험실 사용기관(B기관)' 선택
 - 7-3-1 IBC 구성·운영, 규정·지침 마련·적용 주체는 '공유실험실 운영기관(A기관)' 선택

□ 7-3-1. 안전관리 사항별 이행 주체 선택

□ 7-4. 기관의 대면 현장점검 희망 여부 선택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대면) 방법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면 현장점검 실시 희망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8. 정책 개선 건의사항

<문항>

8-1. 귀 기관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데 가장 어려운 요소는 무엇입니까?

- ① 안전관리 예산 부족(*선택사항*)
- ② LMO 안전 전담인력 부재(*선택사항*)
- ③ LMO 안전 전담부서 부재(*선택사항*)
- ④ LMO 안전관리에 대한 낮은 인식(*선택사항*)
- ⑤ LMO 안전관리 관계자(생물안전관리책임자, 관리자 등)의 지위와 권한이 낮음(*선택사항*)
- ⑥ 타 법률과의 중복규제(*선택사항*)
- ⑦ 기타()
- ⑧ 없음

8-2. 귀 기관의 LMO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관 상위관리자(기관장, 연구책임자 등)의 LMO 안전관리 인식 개선(*선택사항*)
- ②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 활성화(*선택사항*)
- ③ LMO 연구시설 구축(또는 개선) 지원(*선택사항*)
- ④ 기관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선택사항*)
- ⑤ 기관 내 LMO 안전관리 전담조직 구축(*선택사항*)
- ⑥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전담인력 임명 의무화(*선택사항*)
- ⑦ 기타()

8-3. 귀 기관의 LMO 연구환경 안전 확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LMO 연구시설 현장점검 주기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점검 주기 (*선택박스(1~5)*)년 주기

<작성 가이드>

◆ 정책 개선 관련 문항

8. 정책 개선 건의사항

<문항>

8-4. LMO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에서 노력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1-2-3순위 선택)

- LMO 법·제도 개선(*선택사항*)
- 연구현장 대상 인적·물적 지원(*선택사항*)
- LMO 안전 관계자 간 소통 활성화(*선택사항*)
- 연구책임자 및 종사자의 안전의식 강화(*선택사항*)
- LMO 정보시스템 접근성 강화(*선택사항*)
- 기관별 LMO 안전관리 자율성 강화(*선택사항*)
-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홍보 강화(*선택사항*)
- 기타()

8-5. LMO 안전관리 현장지원 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1-2-3순위 선택)

- 찾아가는 컨설팅 등 현장 방문형 지원 확대
- LMO 연구시설 구축 및 장비 지원
- LMO 안전관리 전담인력 및 조직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
- 정부주도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 운영
- 권역별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기타()

8-6. LMO 안전교육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1-2-3순위 선택)

- 기관장,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위원 등 법정교육 대상 확대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신규교육 오프라인(대면)과정 이수 의무화
- LMO 안전 전문가 양성교육 체계화 및 다양화
- 실습형, 토론형 등 안전교육 학습방식 다양화
- LAB 미팅 등 소규모 안전교육을 위한 체계 마련
- LMO 안전교육 콘텐츠 다양화(개발희망주제 :)
- 기관 자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 기타()

8-7. LMO 안전관리에 대한 추가 건의사항 또는 문제점이 있을 경우 작성해 주십시오.

<작성 가이드>

◆ 정책 개선 관련 문항

시설 현황조사 문항 작성 매뉴얼

1. 연구시설 기본현황 (시설현황)

◆ 설치·운영책임자 로그인 후 기본현황은 신고된 LMO 연구시설 정보로 자동입력 ※ 변동사항 발생 시 수정 가능하며, 수정 시 변경신고 대상

연구기관명	자동입력			
시설신고확인번호	자동입력			
설치·운영책임자	성명	자동입력	연락처	자동입력
	'25년 LMO 안전교육 이수	○이수 ○미이수	교육이수증	'25년 설치·운영책임자 교육 이수증 파일 업로드
설치·운영 장소	자동입력			
연구시설 위치 주소	자동입력			
건물명 및 호수	자동입력			
연구시설 등급	○1등급 ○2등급	자동입력		
연구시설 종류	○일반 ○대량배양 ○동물 ○식물 ○곤충 ○어류			자동입력
연구시설 규모	(m ²) 자동입력			
연구시설 특성	○일반연구공간 ○공동실험공간(open lab 등) ○동·식물 사육공간 ○공동기기실(미생물배양실 등 포함) ○LMO보관공간(냉장·냉동실 등)			
연구시설 최초 신고목적	○시험·연구용 LMO 취급		○LMO 수입·판매	
	○시설 등급 부여 등 법적인 관리를 위해		○기타()	
귀 연구시설에 대한 대면 현장점검을 희망하시나요?	○희망 ○희망하지 않음(하위문항 작성)			
선호하는 안전관리 이행 확인방법은 무엇인가요?	○기관 자체점검 및 주기적 보고 ○주기적 온라인 점검 실시 ○기타()			
연구시설사용자(연구활동종사자) 관련				
	구분	연구활동종사자 수(명)	교육이수완료(명)	교육이수율(%)
대학	설치·운영책임자			자동입력
	교수, 연구교수 (설치·운영책임자 미포함)			자동입력
	연구원(postdoc 포함)			자동입력
	대학원생(석·박사)			자동입력
	실습 조교			자동입력
	학사 과정			자동입력
	기타			자동입력

◆ 작성기준 : 2025년 12월

[단어 뜻 설명]

- 연구시설 사용자 : 신고된 LMO 연구시설을 이용하는 자(연구활동종사자 보다 넓은 의미)
- 학사 과정 : LMO 연구시설에서 실험·실습 강의를 받는 학부생 및 상주학생 모두 포함

□ 연구시설 기본현황

- 신고된 LMO 연구시설 정보가 자동입력되며 현재(작성일) 기준의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직접수정 가능
※ 입력내용 수정하더라도 신고내용은 변경되지 않으며 별도의 연구시설 변경신고 진행 필수
- 설치·운영책임자의 '25년 교육이수증 첨부 필수
※ '25년 교육 미이수 시 '26년 LMO 안전교육 이수 후 교육이수증 첨부
- 인정되는 교육 종류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연구책임자 교육, 생물안전관리 책임자 신규·보수교육, IBC 위원 교육(워크숍 포함)

○ 연구시설 특성

시설타입	설명	비고
일반연구공간	LMO미생물, 세포, 바이러스 등의 실험·보관취급이 이루어지는 공간	
공동실험공간	open lab 형태로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시설	공동 사육실 기기실 제외
동식물 사육공간	동물, 식물, 곤충, 어류 등을 사육 또는 배양하는 시설	
공동기기실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시설 중 배양실 등을 포함하는 기기실	일반 배양실 제외
LMO 보관공간	냉장·냉동실 등 LMO를 보관만 하는 공간	

- 연구시설 최초 신고 목적 : 과거 LMO 연구시설 최초 신고 목적 선택
※ 중복선택 불가, LMO 취급(연구)과 다른 보기가 중복 해당되는 경우 LMO 취급(연구) 우선 선택 필수
- 현장점검 희망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대면) 방법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면 점검 실시 희망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시설사용자 : LMO 연구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연구시설사용자 수 입력
- 다수의 LMO 연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주로 상주하는 연구시설의 사용자로 입력
- 관련 연구프로젝트나 실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LMO 연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 LMO 연구시설에서 수업을 듣는 학부생 포함
- LMO 연구시설에서 교육하는 강사 포함 등
- '대학', '병원'의 연구시설 사용자 수가 중복되는 경우 종사자의 소속기관을 기준으로 입력

1. 연구시설 기본현황 (연구현황)

◆ 연구시설 내 취급하는 있는 LMO 및 연구현황 작성 ※ 현재 취급 LMO가 없으며, 향후에도 취급 계획이 없는 경우 폐쇄신고 대상

기관별 연구현황				
연구명		필수입력		
사용하는 숙주	대분류	선택박스	소분류	선택박스
		'LMO 없음' 선택시	LMO 미취급 사유 ①LMO 연구 일시적 중단 ②LMO 연구 종료 ③LMO 연구를 계획했으나 LMO 연구 미실시 ④LMO 연구 계획이 없었음 ⑤기타()	
		향후 계획	①향후 LMO 취급 예정 ②향후 LMO 취급 계획 없음	
LMO 획득경로		①해외(직접수입) ②해외(수입대행이용) ③국내(무상증여) ④국내(구매) ⑤자체제작		
LMO 분양여부		①해외수출(직접수출) ②해외수출(수출대행이용) ③국내분양(무상증여) ④국내분양(판매) ⑤분양이력 없음		
연구단계		①연구개발 단계 ②안전성·효능평가 단계 ③전임상·임상 단계 ④제조·생산·판매 단계 ⑤기타(필수입력)		
시험·연구용 개발 이후 활용 예정인 LMO 용도		①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곤충·미생물) 또는 동물의약품 ②산업용 ③보건의료용 ④환경정화용 ⑤해양·수산용 ⑥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 ⑦활용 계획없음		
이용하는 수출입 대행업체		업체명	필수입력	
비고				

◆ 작성기준 : 현재(작성일) 기준

□ 연구현황

- 연구명 : 연구과제명, 연구주제 등 작성(공개가능수준까지 작성가능)
- 사용하는 숙주 : LMO 연구 시 사용되는 수용생물체를 뜻하며, 대분류 및 소분류 선택 필수
- 시설 내 반입된 LMO가 없는 경우 'LMO 없음'으로 선택 후 LMO 미취급 사유 및 향후계획 작성
※ '향후 LMO 취급 계획 없음' 선택 시 연구시설 폐쇄신고 대상임
- LMO 획득경로(반입)
- 해외 : 연구자 직접구매, 수입대행기관 의뢰
- 국내 : 국내생산물품 구매, 국내 타 기관(연구시설) 등에서 분양
- 자체제작 : 소속된 연구시설에서 LMO 개발

【예시】

- 외국 ATCC에서 대장균을 직접 주문하여 획득 : 해외(직접수입)
- 수입대행 기관을 이용하여 외국 ATCC에서 대장균을 획득 : 해외(수입대행 이용)
- 국내의 생명공학대학교에서 분양받음 : 국내(무상증여)
- 국내 재조합백터 제작업체에서 구입 : 국내(구매)
- 연구시설에서 수입한 일반마우스에 유전자를 재조합하여 유전자변형마우스를 개발 : 자체제작

○ LMO 분양경로(반출)

- 해외수출 : 연구시설에서 직접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대행업체에 수출 의뢰하는 경우
- 국내분양 : 소속 연구시설에서 타 연구시설로 무상증여, 판매

○ 시험·연구용 개발 이후 활용 예정인 LMO 용도

○ 이용하는 수출입 대행업체

- 획득경로 '②해외수출(수입대행이용)', 분양여부 '②해외수출(수입대행이용)' 선택 시 수입대행기관 필수입력

○ 비고 : 특이사항 작성



현황조사 관련 주요 FAQ

순번	주요 질의응답
1	<p>과거 제출한 기관 현황조사 내용은 확인 가능한가요?</p> <p>- 확인 가능하며 경로는 다음과 같음 - [LMO 점검시스템] 로그인(기관총괄담당자) → 기관 현황조사 등록하기 → 2018 ~ 2025년 현황조사 선택하여 과거 제출한 자료 확인 가능</p>
2	<p>기관 및 시설 현황조사 작성 자료는 출력이 가능한가요?</p> <p>- LMO 안전관리 현황조사 작성 자료는 출력 가능(※ 2018년 현황조사 자료는 출력 불가)</p>
3	<p>그동안 점검, 교육 등 법 준수사항을 실시하지 못했는데, 현황조사를 참여하고 “불이행”을 체크해야 하나요?</p> <p>- 현황조사는 기관의 LMO 안전관리 이행 실태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응답해야 함 - 기관의 안전관리 미흡 현황 노출이 걱정되어 현황조사 미참여 시 안전관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현장점검 대상 우선 선정 등 후속조치 실시 예정</p>
4	<p>신고된 LMO 연구시설에서 LMO 반입 및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설 현황조사 제출해야 하나요?</p> <p>- LMO 취급 및 연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연구시설 유지(보유) 시 현황조사 제출 필수 - 향후 더 이상의 연구계획이 없어 폐쇄신고를 희망하는 경우, 현황조사 기간 내 폐쇄신고 완료 후 확인서 제출 시 현황조사 참여 같음(폐쇄신고 처리 기간 : 10일)</p>
5	<p>LMO 연구시설을 폐쇄신고 하였습니다. 기관 현황조사를 제출해야 하나요?</p> <p>- 기관 내 보유 연구시설 모두 폐쇄신고 완료된 경우 : 연구시설 현황조사 → 폐쇄신고확인서 제출 / 기관 현황조사 → 폐쇄신고완료에 체크 필수(제출같음) - 기관 내 일부 연구시설 폐쇄신고 완료, 일부 연구시설 운영 중인 경우 : 연구시설 현황조사 → 폐쇄신고 된 연구시설은 폐쇄신고확인서 제출 / 기관 현황조사 → 작성 및 제출 필수 ※ 폐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현황조사 참여로 같음됩니다.(폐쇄신고서 인정 불가)</p>

순번	주요 질의응답
6	<p>우리 기관은 기관총괄담당자가 없으므로 기관 현황조사 제출이 불가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은 필수사항이므로 생물안전관리책임자가 LMO정보시스템 내 회원가입 후 현황조사 제출해야 함 - 다만, 생물안전관리책임자가 작성이 어려운 경우 기관의 생물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LMO 정보시스템에서 기관총괄담당자로 신규 회원가입 또는 기존회원(설치·운영책임자)이 회원구분을 기관총괄담당자로 변경하여 기관 현황조사 제출 가능
7	<p>우리 기관에서 보유한 연구시설이 현황조사 대상에 누락되어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현황조사 대상은 2008~2025년 신고된 연구시설 및 기관, 단 2026년 현황조사 실시 전까지 폐쇄신고한 연구시설은 대상 제외 - 위 조건에 따라 제외되지 않는 기관 및 시설이 누락된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 필요(LMO 교육팀 043-240-6474, kyongj903@kribb.re.kr)
8	<p>현황조사 미제출 시 제재조치가 있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MO 현황조사 미응답 기관·시설은 후속조치(현장점검) 실시 예정
9	<p>연구시설 설치·운영책임자가 해외출장 등 현황조사 작성 및 제출이 불가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자의 개인사정으로 작성 및 제출이 불가할 경우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현황을 아는 자(기관총괄책임자, 기관소속 관련자 등)가 위임을 받아서 설치·운영책임자 정보로 시스템 로그인 후 작성 및 제출 가능
10	<p>연구시설 신고 당시 설치·운영책임자가 퇴사하여 현황조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MO 연구시설은 기관에서 관리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설치·운영책임자가 퇴사한 경우 기관에서 진행 필수 - 또한, 연구시설 설치·운영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대상이며, 새로운 설치·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 변경신고해야 함